

제107회 도의회 임시회

1993년도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

충청북도

□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액 3천 441억 3천 6백만원보다 많은 118%에 해당하는 4천 61억 4천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에 대한 94.8%에 해당하는 3천 849억 2천 5백만원을
수납하고 3억 4천 9백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5.1%에 해당하는
208억 6천 6백만원이 미수납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 수납액 주요내용은

지방세	1천 337 억 7천 5백만원
세외수입	772 억 4천 3백만원
지방교부세	971 억 3천 2백만원
국고보조금	767 억 7천 5백만원으로,

이는 예산액의 111.8%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 불납결손액의 내용은

행방불명	8천만원
무재산	2억 1천 9백만원
시효소멸 및 기타가	5천만원입니다.

○ 미수납액의 내용은

재산압류	149 억 6천 4백만원
채무자재력부족	17 억 7천 2백만원

행정부수유예등

1 억 2 천 만원
40 억 1 천 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전년도에서 '이월된 89억 4천 8백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3천 441억 3천 6백
만원으로 이증 93%에 해당하는 3천 210억 7천 9백만원을 집행하고 2%에 해당
되는 73억 4천 8백만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4%에 해당되는 152억 9백
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익년도 이월액의 내용은

농특제품전시판매장 설치외 5건에 대한 명시이월비 16억 4천 1백만원,
공무원교육원청사신축공사용역외 30건의 사고이월비 62억 7백만원이며,

○ 불용액의 내용은

예 산 절 감	1 억 3 천 1 백만원
예 산 집 행 잔 액	60 억 9 천 9 백만원
지급사유 미 발생	2 억 9 천 3 백만원

계획변경취소	23 억 2 천 2 백만원
보조금잔액	4 천 8 백만원
예비비비가	63 억 1 천 6 백만원입니다.

□ 다음은 1993년도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의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특별회계의 <사업결산>은

예산액 2천 385억 6천 5백만원의 98%에 해당하는 2천 341억 4백만원을 정수 결정하여 2천 326억 6천 2백만원을 수납하였고, 14억 4천 2백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 수납액의 회계별 내역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26 억 7 천 9 백만원
도로보수증기운영관리특별회계	9 억 5 천 8 백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20 억 6 천 3 백만원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1 억 1 천 4 백만원
공유림관리 특별회계	10 억 1 천 4 백만원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	692 억	8 백만원
농어촌소득개발기금 특별회계	30 억 원	
대청호특별대책 특별회계	22 억 9 천 7 백만원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757 억 9 천 5 백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655 억 3 천 4 백만원	입니다.

- 미수납액 14억 4천 2백만원은 전액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청주 가경2지구 택지조성사업의 매출수익금으로 부동산경기침체 및 채무자의 미상환
으로 인한 미수납금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액 2천 385억 6천 5백만원의 77%에 해당하는 1천 843억 2천 6백만원을 집행
하고, 익년도 이월액이 162억 6천만원,
불용액이 379억 7천 9백만원 발생하였습니다.

- 집행액의 회계별 내역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21 억 3 천만원
도로보수증기운영관리특별회계	8 억 9 백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18 억 2 천 7 백만원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5 천 7 백만원
공유림관리 특별회계	3 억 6 천 4 백만원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	6 3 3 억 9 천 7 백만원
농어촌소득개발기금특별회계	2 9 억 9 천 6 백만원
대청호대책 특별회계	1 5 억 5 천 7 백만원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7 1 3 억 6 천 3 백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2 9 8 억 2 천 6 백만원 입니다.

○ 이월액의 내용은

부용공단조성및 가경2지구조성사업비 90억 2천 6백만원과 상촌 - 흥덕간
도로확포장공사외 28건의 사업비 72억 3천 8백만원이며,

○ 불용액의 내용은

공기업특별회계에서 358억 5천 8백만원, 기타특별회계에서 21억 2천 1백만원 으로.

예	산	절	감	2	천	3	백
집	행	잔	액	4	억	9	만
사	유	발	생				원
계	회	변	경	8	억	6	만
예	비	비	비	3 6 6	억	5	백
				3	천	5	만
				6	천	2	원
				3	천	1	이었읍니다.
				2	천	0	

□ 다음은 채권·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992년도말 현재채권액은 924억 3천 3백만원 이었으나, 1993년도중 지방공채매출 등으로 1천 52억 3천 6백만원이 증가되고 또한 농촌주택개량사업비 회수등으로 158억 8천 6백만원이 감소하므로써 채권총액은 1천 817억 8천 3백만원입니다.

○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4	천	5	백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9	8	백만원	억 천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1	억	7	백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4	천	백만원
농어촌소득개발기금특별회계	2	9	천	백만원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1	천	6	백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1	4	천	백만원
				이며,

<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992년도말 현재채무액은 1천 280억 7천 1백만원 이었으나 1993년도중 지방도 건설사업등으로 521억 9백만원이 증가하고 해외차관상환등으로 151억 9천 6백만원이 감소하므로써 1993년도말 현재 본 도의 채무총액은 1천 649억 8천 4백만원입니다.

○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67억 7천 1백만원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1천 512억 1천 3백만원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 가 70억 원입니다.

□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금관리 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13개 기금의 결산내용은 전년도 기금액이 93억 7천 5백만원에서 금년도에 112억 5천 7백만원이 증가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등 2억 3천 4백만원이 감소되어 '93년 말현재 기금총액은 203억 9천 8백만원입니다.

증가요인은 재해구호기금 18억 8천만원 법규위반차량 과징금 15억 5천 7백만원, 식품진흥기금 15억 2천 1백만원, 문화예술진흥기금 6억 4천 3백만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4억 9천 7백만원등이 수입 되었으며, 감소요인은 중소기업육성자금 8천 9백만원, 4-회원기금 5천만원, 식품진흥 기금 4千 6백만원등의 지출입니다.

□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유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992년도 말의 공유재산 현재액은 642억 5천 7백만원이었으나, 1993년도 중 179억 5천 6백만원이 증가하고 21억 7천 7백만원이 감소하므로써 1993년도 말 현재액은 800억 3천 5백만원으로

증가요인은 임업검사소 부지매입등으로 179억 5천 6백만원이며,
감소요인은 택지개발및 도로에 편입된 토지보상비 21억 7천 7백만원입니다.

둘째, 물품의 증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992년도 말 물품의 현재액은 175억 1천 9백만원 이었으나,
1993년도 중 30억 2천 5백만원이 증가하고 9억 7천 7백만원이 감소됨으로써,
1993년도 말 현재액은 195억 6천 7백만원으로

증가요인은 행정장비 현대화에 따른 사무기기 구입비 11억 3천 3백만원등입니다.

□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도에 사용한 예비비는 10억 4천 4백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지방의회의원선거경비 5 억 4 천 6 백만원

벼 병충해 긴급방제사업비 6 천 2 백만원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보상 1 억 1 천 1 백만원이며,
우암상가아파트 복구비 1 억 8 천 1 백만원
재해대책사업비 6 억 3 천 4 백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199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본 결산을 심의하여 주시면 이후 재정운영의 건실화를 위하여
모든 공직자가 합심하여 노력할것을 다짐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4년 10월 18일
제 107회 임시회

'93. 결산검사결과에 대한 설명

(충청북도)

결 산 검 사 위 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여러분 !

부족한 본의원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해 주셔서 '9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예비비사용에 대한 검사를 '94. 7. 18일부터 8. 6일까지 공인회계사 2인, 유경험자 1인, 동료의원인 김 준석위원등 5인이 결산검사를 완료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검사기간 동안 저희 검사위원들은 금년의 유난히도 무더웠던 더위를 무릅쓰고 재정의 효율적 운영, 예산법위내 집행, 각종 장부마감사항, 보조금,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관리등 관계규정에 의한 검사를 최선을 다하여 심층분석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사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방법에 있어 대표위원이 총괄을 하고 내용은 기능별로 분담하여 주요정책 사항인 예산의 불부합·효과적집행등은 의회위원이 맡고, 일반회계세입과 특별회계 및 재고자산관리는 공인회계사가, 일반회계의 세출전반에 대하여는 유경험자가 맡아 검사한바

지방재정법과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 내무부결산추진지침에서 정하는 바에따라
적정한 결산이 되었으나 앞으로 예산의 심의 및 승인시에 참고할 사안을
몇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실적이 예산액의 112%로 이는 토지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과표인상, 대형 APT 신축 증가등으로 세입액을 확실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세입예산 편성시 세입의 제반 요인을 분석 검토함이 없이 예산에 계상 함으로서
계획재정 운영을 부실하게 하였는바,
앞으로는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사안이며

둘째,

미수납액이 208억 6천 6백만원으로 이를 내역별로 보면,

- 행방불명	1 억	1 천	5백만원
- 채무자 재력부족	17 억	7 천	2백만원
- 재산압류중에 있는것	149 억	6 천	4백만원
- 기타	40 억	1 천	1백만원으로

전년도 170억 3천 1백만원에서 208억 6천 6백만원으로 22% 증가하였음은 도내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직무에 충실하지 못하고, 추진력에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니 앞으로는 채무관리 업무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 채권회수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1억이상 고액 체납자가 총 20명으로서 체납액이 158억1백만원에 달하고 있고 92년보다 인원에서 6명. 금액에서 13억 7천 9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체납시기가 1~6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부동산 압류등만 취한 실정이며, '92결산검사시에도 지적되었으나 체납액이 증가되었음은 체납액 일소에 대한 소신이 부족하고 고액 체납자에게는 관대하고, 소액체납자에게는 강제집행 을 하는등 행정집행의 불평등을 초래했음을 시정할 사안입니다.

셋째,

세출예산의 전용과다입니다.

'92년도 전용이 4건인데 '93년도에는 17건으로 '92년도보다 13건이증가되었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최소한의 예산을 증감조정하여 세출예산을 신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예산회계법과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거 조치한 것으로 판단되나 이를 확대운용할시에는 세출예산전용의 취지에 어긋날뿐 아니라 예산제도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편성시, 실소요액을 정확히 판단 함으로써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하는 것을 가급적 자제 하여야 하겠습니다

넷째,

예산의 집행에 있어 예산현액의 9.1%인 531억 8천 7백만원을 불용처리

하였는바

이는, 대부분이 지출관서의 소액 집행잔액으로서 달리 문제가 없다고

하겠으나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비 3억 6천7백만원은 특별교부세

사업계획을 중앙에서 변경하므로 집행치 못하였고, 청주테크노밸의 설계용역

미실시로 발생한 13억 5천만원과 같이 전액미집행한 사업비가 16억 6천만원이나

되며, 또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383억원의 예비비를 불용시키었음은 예산편성시 소요판단을 정확히하여

계획성있는 예산편성으로 불용요인을 줄여 나가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섯째

소방관서의 신축공사집행부적정 입니다.

증평소방서 신축외 5건의 공사비 16억 2천 7백만원을 집행함에있어 예산을 당초예산

에 확보하고도 부지확보및 관리계획수립등 사전조치가 이루어지지않아 공사계약을

9 - 12월에 체결하여 년도내에 완공하지 못하고 전공사가 이월되었는바,

이는 주민의 생명과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로서 사전조치

를 철저히 하여 모든공사가 년도내 완료되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각특별회계의 집행은 적정한 집행이 이루어졌으나

공영개발특별회계가 42%만 집행되었음은 특별회계의 특수성이 있다하겠으나,

저조한 집행으로 보다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결산심사에 대한 질문사항이 있으리라 사료되오나 결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정활동을 했느냐와 앞으로의 예산편성 심의와
재정계획의 효율적운영을 위한 자료를 추구함에 있으므로 저의 설명으로
질의응답을 가름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